붙임 1) 정관 개정 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본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로 한다.	본 협회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이하 본 협회로 칭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s'로 한다.	문구 수정
제 2조(목적) 본회는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실무를 앙양하고 간호학 지식과 술기를 발전·보급하며, 전문간호사의 권리 및 회원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전문간호의 발전과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학술,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학 지식과 술기' 삭제하고 문구 수정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회에서 정한 곳에 둔다.	본 협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둔다	사무실 주소 구체적인 주소입력
제 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국민보건증진 및 대국민 간호봉사 나. 전문간호사의 역할,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간호사의 실무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라.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 마.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 바.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사. 전문간호사의 권익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 아.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자.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차.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전문간호사의 역할, 권리와 법적 제도의 개선 나. 전문간호사의 실무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 다. 전문간호학 발전과 학술 진흥 라. 전문간호 지식 및 정보 교류 마. 전문간호사의 교육과 육성 바. 전문간호사의 권익옹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 기타 복지향상 사.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 아.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자. 그 밖의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 회 --> 본 협회 3. 변경 사항 없음	가. 국민보건증진 및 대국민 간호봉사 삭제 나 --> 가 다 --> 나 라 --> 다 마 --> 라 바 --> 마 사 --> 바 아 --> 사 자 --> 아 차 --> 자 변경 문구 수정
제 5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 분회를 둘 수 있다.	1. 본 협회는 보건복지부 유관단체로서 지부와 분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본 협회는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두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문구 수정, 조직도 수정 2항 신설
제2장 회원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 및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회원은 정관에 따른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본회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입회를 신청하며,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국내 및 국외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전문간호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간호사로 한다. [개정, 2018.03.24] 2. [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전문간호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로 한다. 3. [특별회원] 본회는 이사회에서 자격과 권한을 정하는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 7조(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회가 제공하는 자료 및 출판물,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 열람과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 또는 각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4. 회원은 간호사의 윤리와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에 등록해야 하며, 회비 및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6. 회원은 본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회의 운영에 협력해야 한다. 7.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이 사 - 20명 이내(총무, 회계, 기획, 학술, 교육, 연구, 홍보, 정책) 4. 감 사 - 2명	본 회→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10조(임원의 선임) 1. [임원 후보]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장 후보] 회장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의 경험이 있던 자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본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3. [회장의 선출] 본회 정관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나. 가목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부회장 후보를 선출직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5. [이사의 선출] 가. 회장, 부회장은 이사가 된다. 나. 이사의 선출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이사 후보를 선출직 이사 당선자로 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6. [감사의 선출] 가.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 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2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총무이사 순으로 회장직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 11 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1-2 항 변경 사항 없음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0일 이내에 지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제 11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3항의 '차기부터' 문구 삭제
제 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직함을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 5. 본회의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15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을 위임 받아 성실하게 집행,관리할 의무가 있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18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1-5항 변경 사항 없음 6.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 --> 본 협회	감사 실시 횟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21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정책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22조(위임) 1. 본회의 회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 의장에게 위임장을 보내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위임 받은 권한은 출석과 의결권을 의미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계획, 결정 및 결산,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호목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9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제30조를 제29조 2항에 통합)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7.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30조(성립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 삭제	29조 2항으로 통합
	제30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1. 이사회는 다음 임무를 담당한다. 가.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나.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제 33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 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30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신설
	바. 정관개정 및 규정 의제, 개정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임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이사회에 연속적으로 불참하거나 임무수행이 불성실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권유할 수 있다.	
제 32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본 회 --> 본 협회	
제6장 위원회 제 33조(위원회) 1.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 33조(위원회) 1. 본 협회는 상설기구로 상임위원회와 비상설기구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를 상설과 비상설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조(상임위원회) 1.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가. 기획위원회 나. 학술위원회 다. 연구위원회 라. 교육위원회 마. 홍보위원회[신설, 16.06.10] 바. 정책위원회[신설, 17.03.18] 2.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이사가 된다. 3.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구성은 위원장이 한다. 4.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맞추어 활동내용을 계획한다. 5.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본 회 --> 본 협회 6항 삭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 규정은 제33조 2항으로 변경함.
제 35조(위원회의 의무) 1. 기획위원회 가. 본회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나. 정관 및 규정 관리 다. 회원관리 라. 기타 본회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사업 2. 학술위원회 가. 학술업무 총괄 나. 학술대회 준비, 개최 및 지원 다. 출판업무 3. 교육위원회 가. 교육업무 총괄 나. 회원의 계속 교육,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및 간호학 발전에 관한 사항 4. 연구위원회	제 35조(위원회의 임무) 1항 – 6항 변동 사항 없음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가. 연구업무 총괄 나. 주제 연구 기획 및 수행 다.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라.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분석 5. 홍보위원회 [신설, 16.06.10] 가. 홍보업무 총괄 나. 본회 홍보물 제작과 취재 다. 모니터 활동 및 대 언론활동 라. 협회 후원관리 6. 정책위원회 [신설, 17.03.18] 가. 협회 정책업무 총괄 나. 전문간호사 관련 법률, 제도 조사 다. 보건의료 관련 제 법규에 관한 사항		
제7장 재정 제 36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본금으로 적립한다. 3.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회원이 본회에 납입한다.	제 36조(재원) 1.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가. 입회비 나. 연회비 및 평생회비 다. 보조금 및 기부금 라. 기타 수입금	문구 수정
제 3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38조(재정의 운용) 1.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회계이사가 총괄한다. 2. 회계이사는 재정 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3. 회장은 회계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4. 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예산 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 및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그 외 관련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 마련을 위한 근거
제 8장 보칙 제 41조(해산 결의)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42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된 때의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제 44조(서면 결의) 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한다.	이사회와 총회 후 결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출석한 임원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날인'에 대한 문구 삭제
제 45조(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1. 본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본 정관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 --> 본 협회	문구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끝 -